

공정은 **청렴**에서 시작합니다!



# 2025년 한눈에 보는 공정거래제도

민생경제 회복과  
미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 
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

Korea Fair Trade  
Commission

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



# 목차

## Part 1 **공정거래제도 일반**

05

### I. **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**

06

- 1. 경쟁 촉진 07
- 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 22
- 3.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27
- 4. 경제력집중 억제 35

### II. **신리받는 기관 운영**

39

- 1.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 40
- 2.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42
- 3. 엄정한 과징금 산정·부과 43
- 4.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 44

### III. **<참고> 공정거래위원회 개요**

45

- 1. 성격 및 기구 46
- 2. 주요 연혁 50
- 3.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51
- 4. 관련 제도 - 동의를결 52



<b>I.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활력제고</b>	<b>57</b>
1. 하도급·유통 분야 정당한 대가 보장	57
2. 가맹·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	59
3.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	62
<b>II.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</b>	<b>64</b>
1.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확립	64
2.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	66
<b>III.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</b>	<b>68</b>
1. 민생 밀접분야 소비자 보호	68
2.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	71
<b>IV. 대기업 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</b>	<b>73</b>
1.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	73
2. 규제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	7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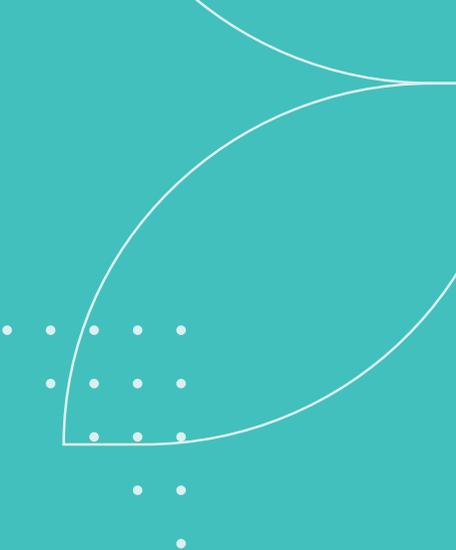




2025년  
한눈에 보는  
공정거래제도

# Part 1





# 공정거래제도 일반

---

- I.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
  - II. 신뢰받는 기관 운영
  - III. <참고> 공정거래위원회 개요
- 

# I

##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

1. 경쟁 촉진
2. 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
3.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
4. 경제력집중 억제



## 1 경쟁 촉진

우리나라 헌법(제119조)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에 **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**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▲**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**, ▲**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**, ▲**부당한 공동행위**, ▲**사업자단체 금지행위**, ▲**불공정거래행위**, ▲**재판매가격유지행위** 등이 있으며,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'공정위')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.

## 1

#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

공정거래법 제5조

시장감시정책과 044-200-4327

## ▣ 시장지배적 사업자(통칭 ‘독과점 사업자’)

-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(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) 가격·수량·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·유지·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

### ↳ ‘일정한 거래 분야’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

▲**관련 상품 시장**(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), ▲**관련 지리적 시장**(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)에 따라 시장획정(market definition) 필요

### ↳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추정 기준

-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\*
  -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% 이상인 경우 그 각 사업자\*(10% 미만 사업자는 제외)
- \* 단, 연간 매출액(또는 구매액)이 8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

## ▣ 금지되는 남용행위 유형

-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·유지·변경하는 행위(가격남용)
-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(출고조절)
-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(사업활동 방해)
-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(진입제한)
-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
(경쟁자 배제, 소비자이익 저해)

## ▣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가격인하, 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,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)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6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)
- (형사벌칙)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

## 심결 사례

### ① Q사 모뎀칩셋 건[1차('09.12월), 2차('17.1월)]

- ✓ Q사가 ①<sup>1차</sup>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, ②<sup>2차</sup>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·제한한 행위,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②2,245억원, ①1조 311억원)

### ② G사 앱마켓 건('23.7월), OS 건('21.12월)

- ✓ G사가 ①<sup>앱마켓 건</sup>모바일 게임사에게 자신의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고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, ②<sup>OS 건</sup>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경쟁 운영체제(안드로이드 변형 OS)를 탑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①421억원, ②2,249억원)

### ③ N사 쇼핑 건('21.1월), 부동산 건('21.1월)

- ✓ N사가 ①<sup>쇼핑 건</sup>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, ②<sup>부동산 건</sup>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①266억원, ②10억원)

### ④ K사 및 L사 이윤압착 건('15.2월)

- ✓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K사와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,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K사20억원, L사45억원)

### ⑤ M사 메신저 끼워팔기 건('06.2월)

- ✓ M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(OS)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, PC 운영체제(OS)에 미디어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325억원)

## 2

##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

공정거래법 제9조

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-200-4932

### □ 기업결합의 수단 및 형태

- **(결합수단)** ①주식취득, ②임원겸임, ③합병, ④영업양수, ⑤회사설립 참여
- **(결합형태)**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당사회사들 간의 관계에 따라 ▲수평결합(동종 업종의 경쟁사업자 간 결합), ▲수직결합(생산·유통 단계에서 인접해 있는 사업자 간 결합), ▲혼합결합(수평·수직결합 이외의 결합)

### □ 기업결합 신고제도(회사 → 공정위 신고 단계)

- **(신고 요건)** 결합당사회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,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
  - **(규모 기준)**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(또는 매출액)이 3천억원 이상이고,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
    - ※ (예: 신고대상 O) 3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, 300억원 회사가 4천억원 회사 인수
    - (예: 신고대상 X) 5천억원 회사가 200억원 회사 인수, 2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
  - **(거래금액 기준)** 자산총액(또는 매출액)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, ▲거래금액(기업결합의 대가)이 6천억원 이상이고, ▲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\*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
    - \*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상품·용역을 판매·제공한 경우 등
- **(신고 시점)**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'사전신고'\* 및 기업결합 이행 후 신고를 하는 '사후신고'로 구분
  - \*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이행행위(주식취득 등)를 해서는 안됨(위반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)
- **(사전신고)** 자산총액(또는 매출액)이 2조원 이상인 '대규모회사'가 ②임원겸임 이외의 기업결합①주식취득, ③합병, ④영업양수, ⑤회사설립을 하는 경우
  - ※ (신고기한)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이행일(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, 임원 선임 의결일, 합병등기일,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 등) 전까지 신고 필요

- (사후신고)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검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하거나,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

※ (신고기한) 기업결합 이행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필요

- (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)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(신고기한 후 신고) 1억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▣ 기업결합 심사제도(심사 단계)

- (심사기간) 기본 심사기간은 30일,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(총 120일)

-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

- (심사 유형) '간이심사'와 '일반심사'로 구분

- (간이심사)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\*되는 경우, 간이심사로 분류하여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

\* 계열사 간 합병, 지배력 미형성,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, 국내 영향이 없는 경우 등

- (일반심사) 간이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획정, 시장현황,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처리

#### 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(심결 단계)

- (시정조치) 심사결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불허하거나(결합 금지),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승인(조건부 승인)

- (결합 금지)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

- (조건부 승인) 구조적 조치(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), 행태적 조치(일정 기간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)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

- (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) 이행강제금 부과(행정제재), 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(형사벌칙)

## 심결 사례

### ① K사-S사 건('24.5월)

- ✓ K사·K엔터테인먼트사가 S사의 주식 39.87%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  - ➔ 조건부 승인, 행태적 시정조치(음원 공급 거절 금지 등) 부과

### ② M사-G사 건('24.3월)

- ✓ 공무원 학원 시장 2위 M사가 1위 G사의 주식 95.8%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수강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  - ➔ 결합 금지

### ③ K항공-A항공 건('22.5월)

- ✓ K항공이 A항공 주식 63.88%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중복노선 중 총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  - ➔ 조건부 승인, 구조적 시정조치(슬롯 및 운수권 이전), 행태적 시정조치(가격인상 제한, 향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등) 부과

### ④ B앱-Y앱 건('21.2월)

- ✓ D사(Y앱)가 W사(B앱)의 주식 약 88%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배달앱·배달대행·공유주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  - ➔ 조건부 승인, 구조적 시정조치(D사코리아 지분 전부매각) 부과

### ⑤ S사-C사 건('16.7월)

- ✓ S사가 C사의 주식 30%를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,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  - ➔ 결합 금지

## 3

##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

공정거래법 제40조

시장감시정책과 044-200-4327

- **[부당공동행위]**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(또는 용역)의 가격·거래조건·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(통칭 '카르텔', '담합', '짬짜미')

- (성립요건) '둘 이상의 사업자' + '합의' + '경쟁제한성'

## ○ 금지되는 카르텔 유형

①가격담합, ②거래조건담합, ③수량담합, ④시장분할담합, ⑤설비제한담합,

⑥종류·규격제한담합, ⑦조인트벤처담합, ⑧입찰·경매담합, ⑨기타·정보교환담합

※ (i) 카르텔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'경성카르텔'이라고 하고 (주로 ①,③,④,⑨ 유형), (ii)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하는 경우 이를 '연성카르텔'이라고 함.

- (i) '경성카르텔'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, (ii) '연성카르텔'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

## ○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20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)

- (형사벌칙)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

## ○ 자진신고자 감면제도(리니언시 제도, Leniency Program)

-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

-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

구분		시정조치	과징금	고발
자진신고자 <sup>조사개시前</sup>	1순위	면제	면제	면제
	2순위	감경	50% 감경	면제
조사협조자 <sup>조사개시後</sup>	1순위	감경 또는 면제	면제	면제
	2순위	감경	50% 감경	면제

## 심결 사례

### ① 가구 입찰담합 건('24.3월)

- ✓ 31개 가구 제조·판매사업자들이 약 10년간('12년~'22년)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\*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

\* 싱크대, 불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가구(설치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)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931억원)

### ② 백신 입찰담합 건('23.8월)

- ✓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('13.2월~'19.10월)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409억원)

### ③ 독일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건('23.4월)

- ✓ 4개 독일 경우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경쟁 확대에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\*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

\* 요소수는 유해물질(질소산화물, NOx)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며,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성능도 그만큼 제한됨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289억원)

### ④ 공공분야 철근 입찰담합 건('22.11월)

- ✓ 국내 철근 시장의 약 99%를 차지하는 11개 제강사들이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입찰에서('12년~'18년)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찰가격을 공유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2,565억원), 7개사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⑤ 육계 담합 건('22.3월)

- ✓ 육계 신선육\* 시장점유율의 77.1%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·판매사업자들이 총 45차례에 걸쳐('05.11월~'17.7월) 판매가격·생산량·출고량과 육계 생계\*\*의 구매량을 담합

\* 치킨,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됨

\*\* 부화·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1,758억원), 5개사 법인 고발

## 4

## 사업자단체 금지행위

공정거래법 제51조

시장감시정책과 044-200-4327

## ▣ 사업자단체

- 그 형태가 무엇이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\*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

\* '공동의 이익'이란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개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며, 그 이익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공동일 필요는 없고 일부에 대하여만 되어도 충분.

단지 친목, 종교, 학술, 조사, 연구,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음.

- 조합, 협회, 협의회, 진흥회, 연합회, 중앙회 등 그 형태나 명칭을 불문

## ▣ 금지되는 행위 유형

- ①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\*(부당한 경쟁제한)

\* 산업구조조정, R&D, 거래조건 합리화,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경쟁제한행위가 허용됨

-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·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(사업자 수 제한)

-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·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(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)

- ④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·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
(불공정거래행위·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·방조)

## ▣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\*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해당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하, 부당한 경쟁제한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0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,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10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)

\*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도 명할 수 있음

- (형사벌칙) ▲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(①부당한 경쟁제한) ▲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(②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)

## 심결 사례

### ① V스키장렌탈샵 협의회 스키 강습료, 장비 대여료 최저가격 설정 건('24.11월)

- ✓ V스키장렌탈샵 협의회가 '22년~'23년, '23년~'24년 시즌의 스키·스노보드 강습료, 장비·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,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여 중인 메신저 대화방에 이를 공지한 후 그 위반여부를 감시하며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
- ➔ 시정명령(재발방지명령, 구성사업자 통지명령)

### ② D협회 신선육 생산량, 가격 결정 건[1차('22.8월), 2차('23.10월)]

- ✓ D협회가 ①1차'12.4월~'16.11월 구성사업자들(계열화사업자 및 농가)의 새끼오리 입식량·종오리 수를 감축하거나 종란 폐기를 결정하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\*한 행위, ②2차 신선육 가격 유지를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
- \* 종란은 부화되어 새끼오리가 되기까지 약 4주, 새끼오리는 육용오리로 사육되기까지 약 6주가 걸리기에 종란·종오리(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) 감축 시 약 10주 후부터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 발생
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①2.23억원, ②0.93억원)

### ③ P협회 문서 탁상 자문 제공 금지 건('19.10월)

- ✓ P협회가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확대 추진 대응 차원에서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문서 탁상 자문\*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
- \*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와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
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5억원), 법인 고발

## 5

## 불공정거래행위 금지

공정거래법 제45조

시장감시정책과 044-200-4327

▣ [불공정거래행위]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

- ① 거래거절 - 공동의 거래거절, 기타 거래거절
- ② 차별적 취급 - 가격차별, 거래조건차별,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, 집단적 차별
- ③ 경쟁사업자 배제 - 부당염매, 부당고가매입
- ④ 부당한 고객유인 - 부당한 이익·위계·기타에 의한 고객유인
- ⑤ 거래강제 - 끼워팔기, 사원판매, 기타 거래강제
- ⑥ 거래상 지위 남용 - 구입강제, 이익제공 강요, 판매목표강제, 불이익제공, 경영간섭
- ⑦ 구속조건부 거래 - 배타조건부 거래, 거래지역·상대방 제한
- ⑧ 사업활동 방해 - 기술의 부당이용, 인력의 부당유인·채용, 거래처 이전 방해
- ⑨ 부당한 지원행위 - 특수관계인 등에 자금·자산·인력 등 지원

▣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4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)\*  
\*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
- (형사벌칙) ▲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(⑨부당한 지원행위) ▲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(④부당한 고객유인, ⑤거래강제, ⑥거래상 지위 남용, ⑧사업활동 방해)

▣ 안전지대(Safety Zone)

-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%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\*  
\* 거래거절, 차별적 취급, 경쟁사업자 배제, 구속조건부거래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만 적용 가능

## 심결 사례

### ① J사 부당한 고객유인 건('23.11월)

- ✓ 의약품 제조·판매사인 J사가 전국 1,500여개 병·의원에 현금 및 물품·식사 및 향응 제공, 골프접대,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('14.2월~'23.10월)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299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② S사 거래강제(사원판매) 건('20.1월)

- ✓ S사가 매년 설·추석 명절에 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·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14.8억원)

### ③ B사 거래상 지위 남용(불이익제공) 건('23.10월)

- ✓ 세계 2위 칩 설계 사업자인 B사가 구매자인 S사에게 부품 선적 중단, 구매주문승인 중단,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용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187억원)

### ④ N사 거래상 지위 남용(구입강제) 건('13.10월)

- ✓ N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·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124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⑤ M사의 사업활동 방해 건('23.8월)

- ✓ M사가 기존에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온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신생 경쟁사업자에 대해 보복출점, 허위 형사고소, 식자재 공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4억원)

## 6

##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

공정거래법 제46조

시장감시정책과 044-200-4327

### ▣ 재판매가격유지행위

-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(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)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

### ▣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

-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켜서 이것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등  
**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**가 있는 경우
- ②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가격경쟁에 익숙하지 않고, 다수의 영세 출판사가 존재하여 예외 인정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, 문화창달을 위해 장려 필요가 있는 「저작권법」상 저작물 중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진 **출판**(전자출판 포함) **저작물**인 경우

### ▣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**(행정제재)** 시정조치(행위중지, 재발방지조치, 관련보복조치 금지, 계약조항삭제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4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)

## 심결 사례

### ① H사 피아노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건('24.3월)

- ✓ H사가 자사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, 그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.66억원)

### ② 타이어 대리점·소매점 최저 판매가격, 판매가격 범위 준수 건('19.4·5·7월)

- ✓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●K사·N사건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·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행위, ●H사건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\*, 멀티브랜드 상품\*\*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
  - \* 도매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
  - \*\* 해당 회사가 수입하여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K사 48.35억원, N사 11.48억원, H사 1.17억원), (K사, N사) 법인 고발

### ③ H사(제약사) 의약품 도매상 재판매가격 유지 건('07.12월)

- ✓ H사가 자사 공급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거래약정서에 지정하고,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리, 제품회수,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행위 등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5.2억원)

# 7

##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공정거래법 제4조

시장구조개선정책과 044-200-43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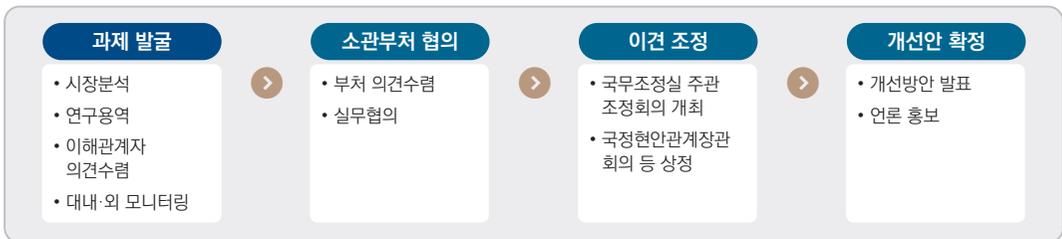
- ▣ **[경쟁제한적 규제 개선]** 불합리한 진입장벽,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등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

###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



### ▣ 업무 절차

####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흐름도



#### 최근 개선사례

- ☑ **(중고차시장 신뢰성 개선)** 판매자가 교부하는 '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'에 '사고이력'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기록(차량 주요 골격부위 수리)되고, 주행거리 조작 문제 지속 제기
  - ➔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에 ▲사고이력이 아닌 '수리의 정도'에 따라 구분 표기하고,
    - ▲ 현재 주행거리(사진첨부)와 자동차이력시스템의 최종 주행거리 병기로 차량 상태 정보 신뢰성 제고 (~'25년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)
- ☑ **(친환경 고급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허용)** 최근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친환경 고급택시로 사용 가능한 기준(배기량, 출력)에 미치지 못해 시장진출 제한
  - 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(축간거리)을 신설하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운용 가능('24.8월, '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' 개정)
- ☑ **(맥주 규제개선 효과 분석)**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소매점(편의점, 대형마트 등) 판매허용, 주류 OEM 생산 허용, 주세 체계 변경(증가세 → 종량세) 등 규제 개선('18~'22년)
  - ➔ 최근 5년간 수제맥주 점유율 10배 이상 확대, 맥주 브랜드수 4배 증가(81→318개), 캔맥주가 약 825원 인하된 것과 유사한 소비자후생 증가효과 확인('23년 기준)

## 2 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



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에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(甲)가 상대방(乙)에 대하여 **거래상 지위를 남용**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**자생적 발전역량**이 **약화**되는 등 **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기반**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
먼저,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**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** 간에 대금 미지급, 부당한 대금의 결정이나 감액, 기술유용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대형마트·백화점 등 **대규모 유통업자**는 전국 단위 영업 등을 통해 막강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, 상대방인 입점업자나 납품업자들이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내하기도 합니다.

한편, **가맹본부와 가맹점, 공급업자와 대리점** 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.

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(제45조)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기에는 부족합니다. 이에 공정위는 **공정거래법의 특별법**으로서 ▲하도급법, ▲대규모유통업법, ▲가맹사업법, ▲대리점법 등을 도입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1

##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

하도급법

기업거래정책과 044-200-4945

- ▣ [하도급거래] 원사업자가 생산활동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거래 방식

  - (적용대상) <원사업자> 대기업·중소기업\* ⇔ <수급사업자> 중소기업

\*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(또는 시공능력평가액)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,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(또는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등)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
  
- ▣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

  - (의무사항) ①서면 발급 및 보존, ②선금금·하도급대금 지급, ③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, ④공급원가 변동 등 대금 조정 협의, ⑤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등
  - (금지사항) ①부당한 특약,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, ③부당한 위탁취소, ④부당 반품, ⑤대금 감액, ⑥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, ⑦기술유용, ⑧보복조치, ⑨탈법행위 등
  - (징벌적 손해배상)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, ③부당한 위탁취소, ④부당 반품, ⑤대금 감액,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, ⑦기술유용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
  
- ▣ 범위반시 제재조치

  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하도급대금 지급, 행위중지, 특약 삭제·수정, 재발방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)
  - (형사벌칙) ▲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(대부분의 의무 및 금지사항 위반), ▲3억원 이하 벌금(보복조치 등), ▲1.5억원 이하 벌금(탈법행위 등)

## 심결 사례

### ① G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건('22.9월)

- ✓ G사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,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 요구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243억원)

### ② H사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건('20.10월)

- ✓ H사가 45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80.5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15억원), 법인 고발

### ③ D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건('21.2월)

- ✓ D사가 18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,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위탁하여 이를 진행토록 하고 공사종료 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53억원), 법인 고발

### ④ C사 기술유용 건('22.5월)

- ✓ C사가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하고 거래선을 변경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9.2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⑤ H사 기술유용 건('24.11월)

- ✓ H사가 ▲수급사업자의 a제품 도면을 사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('1차 기술유용행위'), ▲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자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, ▲경쟁업체에 b제품 도면을 제공해 제조를 요청한 행위('2차 기술유용행위')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26.5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 2

## 대규모 유통업 거래질서 확립

대규모유통업법

유통대리점정책과 044-200-4960

### ○ 대규모 유통업자

-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(또는 매장 면적이 3,000㎡ 이상)인 사업자\*

\* 자신이 임대한 매장의 소비자 판매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(또는 매장 면적이 3,000㎡ 이상)인 대형소핑몰·아울렛 등 매장임대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

### ○ 대규모 유통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

- (의무사항) 서면 발급 및 보존

※ 대규모 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자가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15일 내에 유통업자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

- (금지사항)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, ②상품 수령 거부·반품, ③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,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, ⑤배타적 거래 강요,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, ⑦불이익 제공, ⑧보복조치 등
- (징벌적 손해배상)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, ②상품 반품,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,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

### ○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재발방지, 상품대금 지급, 계약조항 삭제·수정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이하)
- (형사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(⑥배타적 거래 강요,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, ⑧보복조치)

#### 심결 사례

##### ①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('23.12월)

- ✔ C사가 납품업자들에게 ▲경쟁사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, ▲행사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등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18.9억원), 법인 고발

##### ② L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('20.1월)

- ✔ L사가 ▲서면 약정 없이 저가로 삼겹살을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고, ▲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공문을 통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 등

➔ 시정명령, 과징금(408억원)

3

# 가맹·대리점 거래질서 확립

가맹사업법 | 대리점법

가맹거래정책과 044-200-4990 | 유통대리점정책과 044-200-4960

## 가맹거래 및 대리점거래

가맹거래		대리점거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맹본부의 영업표지(상표·상호 등) 사용</li> <li>일정 품질기준, 영업방식 준수</li> <li>통일된 지시·판매전략 적용</li> <li>가맹금 납부</li> <li>가맹금 총액이 6개월 간 100만원 미만 (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)인 경우</li> </ul>	<p><b>영업방식</b></p> <p><b>영업개입</b></p> <p><b>비용</b></p> <p><b>적용제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영업표지 사용 의무 없음</li> <li>인테리어 등 독자 설치</li> <li>대리점 계약 외 제품 판매 가능</li> <li>제품 구매대금 납부</li> <li>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등</li> <li>가맹·금융투자업·대규모유통 거래</li> </ul>	

## 의무 및 금지사항, 범위반시 제재조치

가맹본부		대리점 공급업자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서 교부(계약체결 14일 전) 및 보존</li> <li>허위·과장 정보제공</li> <li>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</li> <li>부당한 영업시간 구속</li> <li>부당한 영업지역 침해</li> <li>불공정행위(거래거절, 거래상 지위 남용 등)</li> <li>허위과장정보 제공</li> <li>보복조치</li> <li>시정조치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2% 이하)</li> <li>▲5년 이하 징역, 3억원 이하 벌금(허위·과장 정보제공), ▲3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(보복조치 등) 등</li> </ul>	<p><b>의무사항</b></p> <p><b>금지사항</b></p> <p><b>징벌적 손해배상(3배)</b></p> <p><b>범위반시 제재조치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서 교부(계약체결 즉시) 및 보존</li> <li>판매목표 강제</li> <li>구입강제</li> <li>경제상 이익제공 강요</li> <li>경영활동 간섭</li> <li>불이익제공</li> <li>주문내역 확인요청</li> <li>거부·회피</li> <li>보복조치</li> <li>구입강제</li> <li>경제상 이익제공 강요</li> <li>보복조치</li> <li>시정조치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징금(범위반 금액 이하)</li> <li>2년 이하 징역, 1.5억원 이하 벌금</li> </ul>	

※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,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의무, 광고·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등이 부과되며, 가맹점주에게는 계약갱신 요청권(최대 10년) 등이 보장됨

### 심결 사례

#### 1 P사 가맹사업법 위반 건(‘24.10월)

- ✓ P사가 ▲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상관없는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, ▲가맹점주에게 매장 새단장(이하 ‘리모델링’)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

➡ 시정명령, 과징금(14.8억원)

#### 2 G사 대리점법 위반 건(‘23.7월)

- ✓ G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행위

➡ 시정명령, 과징금(2.6억원)



### ③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

소비자 정책은 과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**‘보호론적 관점’**에서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**‘주권론적 관점’**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▲**소비자 정책 종합추진체계**를 구축하는 한편, ▲**허위·과장 표시·광고를 시정**하고 ▲**중요 정보를 공개**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**정확한 정보**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▲**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**하고 ▲**표준약관을 보급**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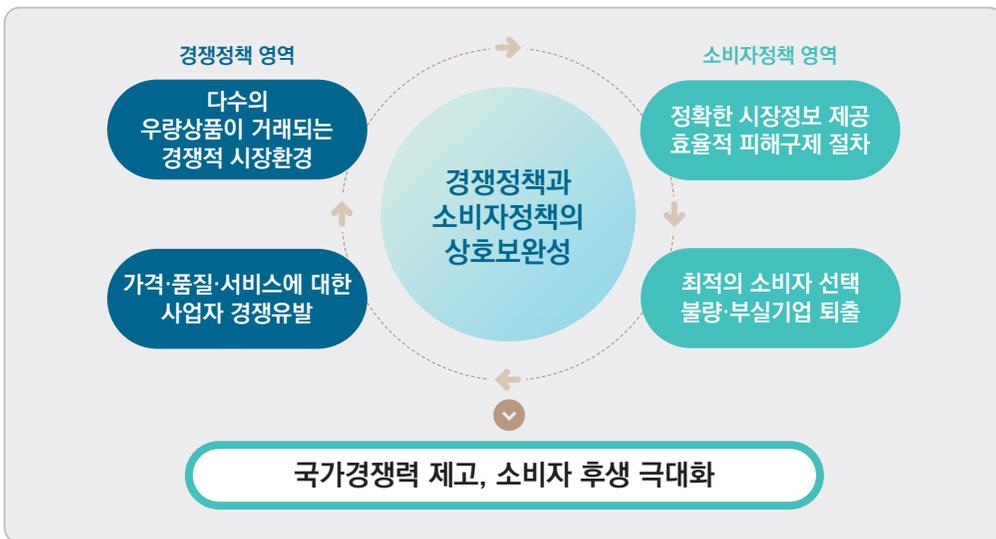
아울러,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, ▲**전자상거래법**, ▲**방문판매법**, ▲**할부거래법** 등을 도입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 개요

- 소비자정책은 ①거래 적정화, ②안전성 보장, ③정보제공, ④소비자 교육, ⑤피해구제 등 5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·유기적인 시책 (관련 부처·기관 간 전문성 조화 필요)

구분		주요 법령		관련 부처·기관
		공정위 소관	타부처 소관	
규제 행정	거래 적정화	공정거래법, 표시광고법, 약관규제법, 전자상거래법, 방문판매법, 할부거래법	전기생활용품안전법, 산업표준화법 등	공정위, 산업부 등
	안전성 보장	소비자기본법	약사법, 식품위생법,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	공정위, 복지부, 산업부, 식약처 등
지원 행정	정보 제공	표시광고법	각 부처 개별법령	공정위, 소비자원
	소비자 교육	소비자기본법	평생교육법	각 부처 공통
	피해구제	소비자기본법, 제조물책임법	민법	공정위, 소비자원, 법원

- '08.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공정위로 일원화
-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상호보완성



## 1

## 소비자 정책 종합추진체계 구축

소비자기본법

소비자정책총괄과 044-200-4405 | 소비자안전교육과 044-200-4418

- **[소비자정책위원회]**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(3년 단위) 및 종합시행계획(1년 단위) 수립

  - (구성)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5명 민·관 위원으로 구성
  - (기능) ①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와 그 결과 공표, ②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, ③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, ④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·권고 등
- **[소비자 권리 선언]**

▲안전권, ▲정보접근권, ▲상품선택권, ▲의견제출권, ▲보상청구권, ▲교육권, ▲소비자단체권, ▲환경권 등
- **[정보 제공·소비자 교육]**

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, 가격·품질 비교정보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, 소비자 능력향상 교육 실시
- **[소비자 안전]**

소비자 위해의 시정요청,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 의무, 자진리콜, 리콜권고·명령, 소비자안전센터 설치·운영
- **[한국소비자원] 소비자권의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**

  - (기능)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①제도와 정책 연구, ②물품 등의 시험·검사, 거래관련 조사·분석, ③정보 수집·제공 및 국제협력, ④소비자 교육·홍보·방송, ⑤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, ⑥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조사·연구, ⑦국가·지자체가 의뢰한 조사, ⑧동의의결 이행관리 등
- **[피해 구제]**

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, 소비자원의 피해구제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집단분쟁조정, 소비자단체소송\*

\*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·중지 청구 소송 제기

## 2

## 부당한 표시·광고 시정

표시·광고법

소비자정책총괄과 044-200-4405

## ▣ 표시·광고

- (표시) 용기,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상품 내용 및 특성, 거래조건 등 사항
- (광고) 상품 내용, 거래조건 등을 신문, 방송, 간판 등으로 알리는 행위

## ▣ 부당한 표시·광고의 성립요건 및 유형

- (성립요건) ‘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각호 유형에 해당’ + ‘소비자오인성’ + ‘공정거래저해성’
- (유형)
  - ▲(거짓·과장 표시광고) 사실과 다르게 표시·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·광고
  - ▲(기만적인 표시광고)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·누락하는 방법으로 표시·광고
  - ▲(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)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·광고
  - ▲(비방적인 표시광고)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·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

## ▣ 법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임시중지명령, 과징금(관련 매출액의 2%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), 과태료(중요정보 고시 위반, 실증자료 미제출,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 사업자 1억원 이하, 임직원 1천만원 이하 등)
- (형사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

## 심결 사례

## ■ M사 등의 부당한 표시·광고 건(‘23.12월)

- 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가 ▲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·광고한 행위, ▲합격자 수·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, ▲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제내용·환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
  - 시정명령, 과징금(총 18.3억원)

## 3

## 불공정약관 심사

약관규제법

소비자거래정책과 044-200-4445

## ○ 약관

-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**여러 명의 상대방**과 체결하기 위해 **미리 마련**한 계약 내용  
(예: 아파트분양 계약서, 버스운송 약관, 콘도회원 약관, 놀이공원 이용 약관)

## ○ 약관의 부당성 판정 기준

- 일반원칙으로 **신의성실 원칙 위반**시 불공정약관
- 개별 금지사항 위반한 조항은 불공정약관
  - ▲(사업자 면책조항) 사업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
  - ▲(손해배상액의 예정) 고객에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
  - ▲(계약해제·해지 제한)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계약 해제·해지권 제한 조항
  - ▲(채무의 이행) 사업자의 급부내용 일방적 변경 등 조항
  - ▲(고객의 권익보호) 이유없이 고객의 권리 배제·제한, 기한의 이익 박탈 등 조항
  - ▲(의사표시 의제) 일방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
  - ▲(대리인의 책임 가중) 부당하게 대리인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
  - ▲(소송상 권리의 제한) 소제기 금지, 재판관할 합의, 입증책임 전환 등 조항

## ○ [불공정약관의 효력] 당면 무효

※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

## ○ [표준약관]\* 사업자·사업자단체, 소비자원, 소비자단체의 청구 → 공정위 심사·제정

\*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·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은 표준이 되는 약관 (현재 77개 분야에 대해 제정·운용 중)

## ○ 범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·수정,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), 과태료(표준약관 표지 부정사용 등 5천만원 이하, 약관 명시·설명 의무 위반 등 5백만원 이하)
- (형사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시정조치 위반)

## 심결 사례

## ■ M사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 건('23.12월)

- ✓ 국내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▲콘텐츠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, ▲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이 아닌 예치금으로 환급하는 조항, ▲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게 규정하는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여 운영한 행위
- ➔ **자진시정 완료(심사절차 종료)**

## 4

##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

전자상거래법

소비자거래정책과 044-200-4445

- ▣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

  - (전자상거래) 상품·용역 거래(주문·결제·이행)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
  - (통신판매) 인터넷,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(예: 인터넷쇼핑, TV홈쇼핑, 카탈로그쇼핑 등)
  - (통신판매중개)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 (예: 오픈마켓, 가격비교 사이트 등)
- ▣ [소비자 철회권] 법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

  - (단순 변심)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
  - (계약 위반) 재화 등이 계약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(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)
- ▣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금지사항

▲허위·과장·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·거래하거나 청약철회·계약해제 방해, ▲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 변경·폐지, ▲분쟁·불만처리 인력 및 설비 부족 방지, ▲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, ▲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제공을 강요, ▲무단으로 소비자 정보를 이용, ▲동의·고지 없는 무단 프로그램 설치
- ▣ 법위반시 제재조치

  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의무이행, 시정명령사실 공표, 영업정지 등), 임시중지명령, 과징금(관련 매출액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), 과태료(임시중지명령 위반 1억원 이하, 조사 거부·방해 5천만원 이하, 거짓 자료 제출 등 3천만원 이하 등)
  - (형사벌칙) ▲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시정조치 위반 등), ▲3천만원 이하 벌금(통신판매업 미신고 등), ▲1천만원 이하 벌금(사업자 신원정보 거짓제공 등)

## 심결 사례

## ■ N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('24.1월)

- ✓ N사가 온라인 PC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, 아이템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의 출현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

  - 시정명령, 과징금(116억원)

## 5

## 특수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

방문판매법

특수거래정책과 044-200-4430

- 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·전화권유·사업권유·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에 적용
-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
  - (의무사항) ▲등록(자본금 5억원 이상(후원방문 제외)), ▲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, ▲계약 전 정보 제공, ▲계약서 교부, ▲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기준 변경 시 3개월 이전 통지
  - (금지사항) ▲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%(후원방문 38%)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, 개별 상품가격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, ▲판매원(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)에게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등을 부과하는 행위 등
-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정보공개제도
  - 상호·주소 등 사업자 주요 정보, 후원수당, 판매원 수, 매출액 등 정보 제출 및 공개
- 범위반시 제재조치
  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의무이행, 시정명령사실 공표, 영업정지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), 과태료(조사거부·방해 등 5천만원 이하, 거짓 자료 제출 3천만원 이하 등)
  - (형사벌칙) ▲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(미등록 다단계판매 등), ▲5년 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이하 벌금(다단계판매 계약체결 강요 등), ▲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다단계판매 변경사항 거짓 신고 등) 등

## 심결 사례

## ■ R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('23.12월)

- ✔ 다단계판매업자인 R사가 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(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%)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
  - 시정명령, 과징금(9억원), 법인 고발

## 6

##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

할부거래법

특수거래정책과 044-200-4430

### 할부거래·선불식 할부거래에 적용

- (일반 할부거래) 소비자가 대금 완납 전 재화·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2개월·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
- (선불식 할부거래) 상조·여행 등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·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에 재화·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

###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

- (의무사항) ▲등록 및 신고, ▲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\*, ▲계약 전 정보제공, ▲계약서 교부, ▲선수금 관련 통지, ▲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 
\* 사업자 폐업·부도시 선수금의 50%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전
- (금지사항) ▲거짓·과장·기만 거래, ▲청약철회·계약해제 방해 등

###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제도

- 상호·주소 등 사업자 주요정보, 회계감사보고서·선수금 등 정보 제출 및 공개

### 법위반시 제재조치

- (행정제재) 시정조치(행위중지, 의무이행, 시정명령사실 공표, 영업정지 등), 과징금(관련 매출액 이하,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), 과태료(지위승계 허위신고 등 5천만원 이하,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3천만원 이하, 계약서 미발급 등 1천만원 이하 등)
- (형사벌칙) ▲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), ▲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(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대여 등), ▲1천만원 이하 벌금(계약해제 관련 조치 지연·거부 등)

#### 심결 사례

##### ■ H사의 할부거래법 위반 건('21.12월)

- ✓ H사가 ▲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연 지급·미지급한 행위, ▲15일을 경과하여 대표이사 변경을 신고한 행위
- 시정명령, 과태료(8백만원), 법인 고발



## 4 경제력집중 억제

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**자유롭고 공정한 경쟁**이 저해되고 **효율적인 자원배분**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.

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이나 경쟁제한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**경제력집중 억제 정책**이 도입·운영되고 있습니다.

이를 위한 제도로는 ▲상호출자·순환출자 금지제도, ▲채무보증 제한제도, ▲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, ▲지주회사 제도, ▲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, ▲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, ▲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, ▲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제도 등이 있습니다.

1

##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

공정거래법 제17조~제39조, 제47조, 제49조, 제50조

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-200-4932

- **[적용대상]** ▲공정위가 지정하는 <sup>매년 5월1일</sup> 대규모기업집단 <sup>공시·상출</sup> 및 소속 계열회사, ▲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·손자·증손회사
  - (공시대상기업집단)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
  - 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 자산총액이 GDP의 0.5% 이상인 기업집단
  - (지주회사) 주식을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(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+ 자회사 주식이액이 자산총액의 50% 이상)

↳ 기업집단: 동일인(총수 또는 최상단법인)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

↳ '사실상 지배'는 지분을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

- (지분율 기준)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\*가 30% 이상 지분 소유 + 최다출자자
  - \* 친족(동일인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),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·계열회사 및 임원 등 사용인
- (지배력 기준)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%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, 동일인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

### ○ 경제력집중 억제제도



▣ 주요 제도별 개요

주요 제도	주요내용 및 목적	적용대상	법위반시 제재조치
<b>상호출자 금지</b> (법 제2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출집단 계열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회사 주식 보유 금지</li> <li>두 계열회사 간 가공자본 형성(A↔B)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집단 확장 억제</li> </ul>	자산총액 <b>GDP의 0.5% 이상</b> 기업집단 (상출집단) 소속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행정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정명령</li> <li>- 과징금 (관련금액 20% 이하)</li> </ul> </li> <li>▶ 형사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이하 징역</li> <li>- 2억원 이하 벌금</li> </ul> </li> </ul>
<b>신규순환출자 금지</b> (법 제2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 금지</li> <li>셋 이상 계열회사간 가공자본 형성(예:A→B→C→A)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집단 확장 억제</li> </ul>		
<b>채무보증 제한</b> (법 제2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출집단 계열회사(금융·보험사제외)는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 금지</li> <li>연쇄·동반부실 방지, 문어발식 기업확장 억제,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방지</li> </ul>		
<b>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</b> (법 제25조 제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출집단 금융·보험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(다만, 상장계열사가 ▲임원 임면, ▲정관 변경, ▲합병·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(동일인+동일인관련자) 합산 15%까지 행사 가능)</li> <li>금융·보험사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기업집단 확장 억제</li> </ul>		
<b>공익법인 의결권 제한</b> (법 제25조 제2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출집단 공익법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(다만, 상장계열사가 ▲임원 임면, ▲정관 변경, ▲합병·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%까지 행사 가능)</li> <li>공익법인을 이용한 기업집단 확장 억제</li> </ul>		
<b>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* 금지</b> (법 제4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시집단 계열회사가 총수일자본율이 20%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(또는 그 계열회사가 50%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)와 총수일자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</li> </ul>	자산총액 <b>5조원 이상</b> 기업집단 (공시집단) 소속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행정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정명령</li> <li>- 과징금 (관련금액 10% 이하)</li> </ul> </li> <li>▶ 형사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이하 징역</li> <li>- 2억원 이하 벌금</li> </ul> </li> </ul>
<b>공시 의무</b> (법 제26~2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집단 현황 공시,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,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,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</li> </ul>		
<b>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</b> (법 제18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주회사는 부채비율(부채액/자본총액×100) 200% 초과 금지, 비계열사 주식 5% 초과 소유 금지, 금융·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</li> <li>지주회사(자회사)는 자회사(손자회사) 지분을 일정비율(상장30%, 비상장50%) 이상 의무 보유, 자회사(손자회사)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</li> <li>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소유 금지 (100% 지분보유시는 가능)</li> </ul>	지주회사 및 자·손자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행정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정명령</li> <li>- 과징금 (관련금액 20% 이하)</li> </ul> </li> <li>▶ 형사벌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이하 징역</li> <li>- 2억원 이하 벌금</li> </ul> </li> </ul>

\* '총수일자본 사익편취행위'로도 칭하며, 부당한 지원행위(법 제45조 제1항 제9호)와 합하여 '부당 내부거래'로 통칭함

## 심결 사례

### ① D사 상호출자 금지 위반 건('09.10월)

- ✓ D사가 합병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6개월(해소 유예기간)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행위
  - ➔ 주식처분명령, 과징금(1.7억원)

### ② M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건('20.10월)

- ✓ 금융보험사인 M사가 계열사인 H사의 정기주총에 참가해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

### ③ K사 채무보증 제한 위반 건('24.4월)

- ✓ K사가 계열사인 P사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.5억원)

### ④ 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('20.11월)

- ✓ K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K사를 지원하기 위해 G그룹으로 하여금 계열사 A사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신 K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토록 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320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⑤ H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('23.8월)

- ✓ H그룹의 최상단회사인 H사가 총수 2세 소유의 A사, B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고 A·B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총 608억원), 법인·개인 고발

### ⑥ I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위반 건('24.3월)

- ✓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I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
  - ➔ 시정명령, 과징금(14.8억원)

### ⑦ S사의 공시의무 위반 건('23.11월)

- ✓ S그룹 소속 S사가 소속 공익법인 S대학교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, 공시도 하지 않는 행위
  - ➔ 과태료(4천만원)

## II 신뢰받는 기관 운영

1.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
2.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
3. 엄정한 과징금 산정·부과
4.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

1

# 적법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

조사총괄담당관 044-200-4670

- [조사의 성격] 피조사업체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는 “임의조사”
- 적법 절차 및 조사의 투명성·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운용
  -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조사절차규칙(고시)」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

구분	주요 제도	내용
원칙	조사권 남용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법 시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조사 실시</li> <li>▶ 조사 공문상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 실시</li> </ul>
	변호인의 조력권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원칙적으로 조사 수과정에 변호사 참여 허용</li> </ul>
계획 수립	조사대상 선정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객관적·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</li> <li>▶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, 선정기준 및 근거, 조사대상 업체 명단 등 명시</li> <li>▶ 조사계획 및 조사 관련 정보 보안 유지</li> </ul>
조사 개시 단계	조사공문 교부·설명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공문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사기간·목적*·대상**·방법</li> <li>-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시 법률상 제재 규정</li> <li>-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권리</li> </ul> </li> <li>* (목적) 관련 법 조항과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·관련 거래 분야 등을 포함한 법 위반 혐의를 기재</li> <li>** (대상) 피조사업체 명칭,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</li> </ul>
	준법지원부서 원칙적 조사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준법지원부서(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)는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</li> </ul>
	조사 시간 및 기간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 진행</li> <li>▶ 조사는 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 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공문 교부 후 조사기간 연장</li> </ul> </li> </ul>
	자료보존 요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실시 前 부서 책임자 등에게 전산·비전산 자료보존 요청서를 교부하여 협조 요청</li> </ul>

구분	주요 제도	내용
조사 실시 단계	사전 협조 요청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조사업체 책상·서랍·캐비닛·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에 부서 책임자 등의 <b>사전 협조</b>를 구한 후 실시</li> <li>▶ 피조사업체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조사시 관계자의 <b>사전 협조</b>를 구하거나 <b>입회</b>하여 실시</li> </ul>
	자료복사 협조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피조사업체 임직원이 <b>복사</b>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<b>응해야 함</b></li> </ul>
	수집·제출 자료목록 교부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<b>현장조사 종료 즉시</b> 수집·제출자료 <b>목록</b>을 교부</li> </ul>
	진술 확인 강요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조사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<b>특정 진술</b>이나 <b>확인</b>을 강요할 수 없음</li> </ul>
	의견제출 및 진술권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등은 <b>언제든지 의견제출</b> 및 <b>진술</b> 가능</li> </ul>
	일시 보관 물품에 대한 조서 작성 및 교부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출된 자료나 물품을 일시 보관시 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</li> </ul>
조사 종료 단계	성실 설명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현장조사 종료시 <b>이후의 사건처리절차</b>에 대해 <b>충분히 설명</b>하여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</li> </ul>
	애로·건의사항 신고절차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조사업체는 현장조사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<b>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신고</b> 가능</li> </ul>
	수집·제출자료 반환·폐기를 위한 이의제기권리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조사업체는 현장조사 종료 후 <b>7일 이내</b>에 <b>조사목적과 관련성이 없는</b> 현장조사 수집·제출자료에 대한 <b>반환·폐기 요청</b> 가능</li> </ul>
사건 처리 단계	예비의견청취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 등이 심사관 등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<b>예비의견청취절차 실시</b></li> </ul>
	사건처리 결과 통지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조사 결과 <b>처분</b> 등이 내려지는 경우 그 내용, 근거 및 사유 등을 <b>서면으로 통지</b></li> </ul>

## 2

##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

심판총괄담당관 044-200-4121

○ 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,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운영

-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규칙(고시)」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

주요 제도	내용
의견 진술 기회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前 구술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심인에게 <b>의견 진술 기회 부여</b></li> <li>▶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</li> </ul>
자료 열람 또는 복사청구권	▶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청구 가능
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	▶ 심의·의결 중 심사관의 조사 진행, 진술 청취 금지
심사보고서 등 송부 및 의견서 제출	▶ 심사보고서, 첨부자료목록, 첨부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
심의 부의	▶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 사건을 심의에 부의
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권	▶ 피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
심사관에 대한 질문권	▶ 심사관의 진술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심사관에게 질문할 수 있음
증거조사 신청	▶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
피심인 의견진술	▶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 종류 및 내용, 과징금 부과,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, 피심인에게 <b>최후 진술 기회 부여</b>
심의속기록 및 의결서 공개	▶ 위원회 <b>심의속기록 및 의결서</b> 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
위원회 회의 참관	▶ 누구나 참관 신청을 통해 전원회의·소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 <b>방청 가능</b> (선착순)

### 3

## 엄정한 과징금 산정·부과

심판총괄담당관 044-200-4121

- 공정위 과징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**금전적 제재** 및 **부당이득 환수**의 성격
  -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가맹사업법, 대규모유통업법, 대리점법, 표시광고법, 할부거래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 등 9개 법률 위반시 과징금 부과 가능

### ○ 과징금 산정·결정 절차(「과징금 고시」)



☞ 과징금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결정되며,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

#### 세부 산정 절차



## 4

##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노력

송무담당관 044-200-4153

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24.6% 수준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공정위 처분 건수(건)	242	246	219	236	254	1,197
소제기 건수(건)	60	68	62	45	60	295
<b>소제기율(%)</b>	24.8	27.6	28.3	19.1	23.6	<b>24.6</b>

☞ 공정위 처분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포함되기 때문에, 사업자 입장에서서는 최대한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투어보려는 것이 일반적임

최근 5년간 공정위는 90.9%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음

(단위: %)

연도*	전부승소율(A)	일부승소율(B)	승소율(A+B)	전부패소율
2020년	70.9	17.7	88.6	11.4
2021년	82.0	10.0	92.0	8.0
2022년	70.9	20.9	91.8	8.2
2023년	71.8	18.8	90.6	9.4
2024년	82.4	8.8	91.2	8.8
2020년~ 2024년 평균	76.0	14.9	90.9	9.1

\* 판결확정 연도 기준

※ 일부승소 사건은 대부분 ▲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되나, ▲조치수준(과징금액 등)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임  
→ 이 경우,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함



# III

## 〈참고〉 공정거래위원회 개요

1. 성격 및 기구
2. 주요 연혁
3.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
4. 관련 제도 - 동의를결

## 1

## 성격 및 기구

## 01 설립 목적 및 성격

## ○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

-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·집행
- 아울러,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준사법적 기관의 성격도 지님
  - 공정거래위원 임기·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
  -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\*
    - \*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범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
  -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며, 불복하는 사업자는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

## 02 주요 기능

기능	정책분야	주요 내용
경쟁 촉진	경쟁정책	독점력 남용, 담합, 경쟁제한적 M&A 등 시정, 경쟁제한적 규제개선
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구축	기업거래· 유통정책	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, 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 보호
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	소비자정책	소비자 역량 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·구제
경제력집중 억제	대기업집단정책	대기업집단 소유·지배구조 개선, 부당한 내부거래 등 시정

## 03 소관 법률

### ○ 총 14개 법률 운용 중

-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(5): ①공정거래법, ②하도급법, ③가맹사업법, ④대규모유통업법, ⑤대리점법
- 소비자 분야(9): ⑥소비자기본법, ⑦표시광고법, ⑧약관규제법, ⑨할부거래법, ⑩방문판매법, ⑪전자상거래법, ⑫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, ⑬제조물책임법, ⑭중대재해처벌법

법률명	목적	제정일(시행일)
①공정거래법	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제재,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	'80.12.31. ( '81.4.1.)
②하도급법	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	'84.12.31. ( '85.4.1.)
③가맹사업법	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	'02.5.13. ( '02.11.1.)
④대규모유통업법	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	'11.11.14. ( '12.1.1.)
⑤대리점법	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	'15.12.22. ( '16.12.23.)
⑥소비자기본법	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, 소비자 정책의 종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도모	'80.1.4. ( '82.9.13.)
⑦표시광고법	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	'99.2.5. ( '99.7.1.)
⑧약관규제법	불공정약관 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	'86.12.31. ( '87.7.1.)
⑨할부거래법	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	'91.12.31. ( '92.7.1.)
⑩방문판매법	방문판매, 전화권유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판매 등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	'91.12.31. ( '92.7.1.)
⑪전자상거래법	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	'02.3.30. ( '02.7.1.)
⑫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	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·자립·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	'99.2.5. ( '99.8.6.)
⑬제조물책임법	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	'00.1.12. ( '02.7.1.)
⑭중대재해처벌법	안전·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	'21.1.26. ( '22.1.27.)

## 04 조직

### ▣ 위원회 구성(공정거래법 제57조 등)

- **공정거래위원회**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3인,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 위원으로 구성
- **위원장(장관급)**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- **부위원장(차관급)**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- **위원(상임·비상임)**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### ▣ 조직 및 정원('25.2월 기준, 647명)

- **[본부]** 사무처장, 조사관리관, 6국 3관 1대변인 43과 5팀 / 483명
- **[소속기관]** 5개 지방사무소(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대구) / 164명

### ▣ 산하기관

- **[한국소비자원]**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근거('87.7.1. 설립)
  - 소비자 정보 제공, 소비자 교육, 소비자 안전 확보,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, 물품 등 시험검사, 소비자 정책 연구 등
- **[한국공정거래조정원]**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 근거('07.12.3. 설립)
  - 공정거래법 등 관련 분쟁조정, 공정거래위원회 위탁 사항 등

조직도



## 2

## 주요 연혁

## 1980년대

- '80. 12. 31.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
- '81. 4. 1.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
- '81. 4. 3. ▶ 경제기획원장관 소속 공정거래실 설치  
(1심의관 2심사관 5개과, 정원 75명)

## 1990년대

- '90. 4. 7. ▶ 경제기획원에서 공정위 분리  
(사무처 신설 :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, 정원 221명)
- '94. 12. 23. ▶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(차관급)  
(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, 정원 343명)
- '96. 3. 8. ▶ 장관급 격상  
(소비자보호국, 하도급국 신설, 정원 385명)
- '97. 8. 12. ▶ 기획관리관, 심판관리관 신설  
(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, 정원 422명)

## 2000년대

- '07. 8. 7. ▶ 시장분석본부 신설  
(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504명)
- '08. 2. 29. ▶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정책 기능 이관  
(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493명)

## 2010년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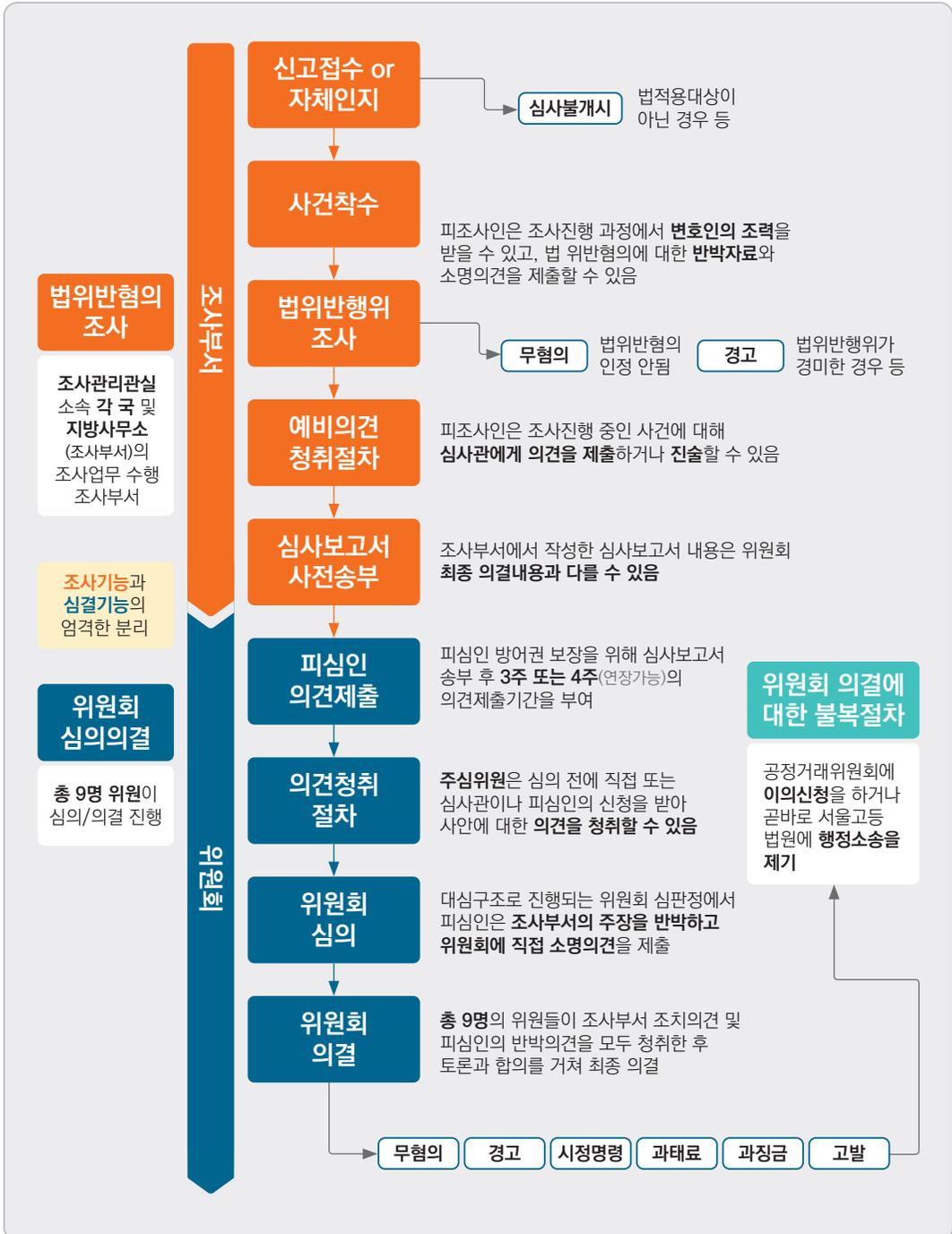
- '13. 3. 23. ▶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 
(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523명)
- '13. 9. 17. ▶ 입찰담합감시과 신설  
(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530명)
- '16. 12. 13. ▶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 
(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536명)
- '17. 9. 21. ▶ 기업집단국,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 
(6국 3관 1대변인 42개과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601명)
- '18. 11. 19. ▶ 유통정책관, 기술유통감시팀 신설  
(6국 4관 1대변인 44개과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648명)

## 2020년대

- '22. 12. 20. ▶ 기술유통감시과 신설  
(6국 4관 1대변인 43개과 2팀,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652명)
- '23. 4. 14. ▶ 조사-정책기능 분리, 조사관리관 신설 등  
(6국 3관 1대변인 43개과 3팀, 5개 지방사무소, 정원 653명)

3

# 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



## 4

## 관련 제도 - 동의의결

### 동의의결

- 조사·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·소비자 피해구제·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,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

### 관련 법률

- ▲공정거래법(제90조), ▲하도급법(제24조의10), ▲가맹사업법(제34조의3),
- ▲대규모유통업법(제34조의3), ▲대리점법(제24조의2), ▲표시광고법(제7조의2),
- ▲방문판매법(제50조의3)

### 효과

- (소비자) 시정조치로는 어려운 가격 인하·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
- (사업자) 사업상 불확실성 조기 제거, 법위반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 방지
- (정 부) 피조사 사업자 동의를 얻어 원활한 법집행, 행정비용 절감

### 절차



2025년  
한눈에 보는  
공정거래제도

---

Korea Fair Trade Commission

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



2025년  
한눈에 보는  
공정거래제도

# Part 2



# 2025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

- I.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활력제고
- II.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
- III. 소비자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
- IV. 대기업 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

##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대비를 위한 공정거래기반 조성

공정위는 ▲민생경제 회복과 ▲미래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 
공정거래 시장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### I. 중소기업· 소상공인 활력제고

- ① **하도급·유통 분야 정당한 대가 보장**
  - [하도급]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
  - [유통] 납품대금 적시지급 및 유용방지
- ② **가맹·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**
  - [가맹]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
  - [가맹] '1+1'제도 확대
  - [대리점]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
- ③ **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**
  - '노쇼' 위약금 기준 현실화
  - 온라인 광고대행 분야 표준약관 제정

### II.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

- ① **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확립**
  -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
  -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변화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개편
- ② **미래 신성장동력 확보**
  - 핵심산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
  - 데이터·구독경제 정책보고서 발간

### III.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

- ① **민생 밀접분야 소비자 보호**
  -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확대
  - 국외여행·헬스장 표준약관 개정
  - 상조 통합 플랫폼 구축
- ② **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**
  - 이용·구매후기 관리투명성 강화
  - C2C플랫폼 분쟁해결역할 확대 등

### IV. 대기업 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① **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**
  -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
  - CVC 출자·투자 규제 완화
- ② **규제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**

## 1

## 하도급·유통분야 정당한 대가 보장

## 01

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 
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■ 지급보증제도, 직접지급제도 등 대금보호를 위한 **기존 제도들의 실효성**을  
**강화**하고, **새로운 안전장치** 신설도 병행 추진

- **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\* 면제사유를 개선하여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**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)
  - \* “지급보증제도”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유사 시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, 현행 발주자 직불합의 시에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특히 민간발주자 부도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
- **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.** (하도급법 개정사항)
  - \*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급불능, 원사업자가 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등에 한정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발생
- **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의 압류 등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** (하도급법 개정사항)

↳ 대금 미지급 등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,  
800만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하도급·유통분야 정당한 대가 보장

## 02

티몬·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 
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.

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,  
▲정산기한 준수, ▲대금별도관리, ▲그 밖의 투명성·공정성 관련 의무 부과

- 전년도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20일\* 이내에는 정산하고,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(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)
  - \* 기한 설정으로 인한 실질적 개선 효과와 정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업계 부담, 법 적용 예상 업체들의 정산 관행(산술평균 19일) 등을 고려
  - 또한,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의무·연성규범 등을 적용하겠습니다.

☞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, 플랫폼 업계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가맹·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

## 03

**가맹점주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**

- 가맹본부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 
→ 정보제공의 **적시성 제고** 및 **정보 비대칭성 완화**

※ 정보공개서 제도 개요 :

(정보공개서의 의미)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,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함

(정보공개서 등록제)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등록기관(공정거래조정원, 지자체)에 사전 등록(등록기관 심사 必)토록 하는 제도

-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. (가맹사업법 개정사항)

- 공시제 도입 시 가맹본부는 장기간이 소요\*되는 사전심사 과정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정보를 즉시 공시·제공하고, 공정위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된 정보를 사후 점검하게 됩니다.

\* 정보공개서 건당 심사 기간 : ('20년) 55.4일 → ('23년) 86.8일

- ↳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제공의 적시성이 높아지고, 본부-점주 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가맹·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

## 04

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 
‘1+1제도’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가맹사업 업종 변경 시 변경 업종에 대한 직영점 운영의무 부과  
→ 사업경험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여 **창업 안정성 제고**

※ 1+1제도 : 직영점(1개 이상)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,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

- 가맹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업종에 대한 직영점 운영의무(1년 이상)를 부과하고자 합니다. (가맹사업법 개정사항)
- (종전 제도의 문제점) 업종 변경 시에는 직영점 운영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문제 발생

종 전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맹사업 신규 개시 시(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) 1+1 제도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맹사업 신규 개시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 시에도 1+1제도 적용</li> </ul>

- 가맹본부의 업종 변경을 통한 ‘1+1제도’ 회피 사례를 차단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창업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가맹·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

05

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 
계약 해지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대리점계약 해지시 해지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설정  
 → 일방적·부당한 계약해지를 제한하여 **대리점의 지위 강화**

- **대리점계약의 중도해지시 해지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** (대리점법 개정사항)
  -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해지사유 시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  - 계약해지 통지는 일정 횟수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    - \* 유예기간, 사전통지 횟수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

- ➔ 대리점이 해지사유를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 
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여  
 대리점의 안정적 사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3

##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

## 06

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 
‘노쇼’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.

사업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기준 현실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

- 다양한 외식업 분야의 ‘노쇼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사업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겠습니다. (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사항)
- 현재 기준은, ‘노쇼’로 인한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% 이하로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(예: 30분전)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데, 이러한 기준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

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

귀책 주체 및 취소 시기		위약금
▶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		예약보증금*의 2배 환급
▶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	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	없음(예약보증금 환급)
	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	예약보증금

\* 총 이용금액의 10% 넘지 않도록 하고,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%를 예약보증금으로 봄

↳ ‘노쇼’로 인한 위약금 기준을 업종별 실태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,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3

##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

07

##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겠습니다.

-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광고대행 거래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 
→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많이 이용하는 **자영업자 피해 예방**

- 온라인 광고대행 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약 안내서를 마련(과기정통부 주관)하고,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계약사항, 위약금 기준 등이 담긴 표준약관을 제정하겠습니다.

※ 현재,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및 수사의뢰 지원 등을 위해 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)와 민관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운영 중

- ↳ 온라인 광고대행 거래분야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, 온라인 광고를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확립

## 01

독과점 플랫폼의 경쟁행위를 차단해  
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.

▶ 플랫폼 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**제도개선** 및 ▶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플랫폼의 **불공정행위 감시 강화**

- 플랫폼 분야 경쟁촉진\*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,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  
\* 4대 反경쟁행위: 자사우대, 끼워팔기, 멀티호밍 제한, 최혜대우 요구
-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·버티컬·모바일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·사업방해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시정하겠습니다.

## 플랫폼 불공정 관행 등 중점 점검 분야 내용

구독형 플랫폼	▶ 음원 스트리밍 끼워팔기, 멤버십 끼워팔기 등
버티컬 플랫폼	▶ 숙박·인테리어·패션 플랫폼 불공정거래(할인쿠폰 판매·운영 제한, 他플랫폼 입점제한 등),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(부당 면책조항 등) 등
모바일 플랫폼	▶ 앱마켓, 모바일 브라우저 관련 거래강제 등

↳ 플랫폼 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, 독과점 플랫폼의 反경쟁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 1

##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확립

## 02

온라인 거래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 
전자상거래법 제재규정을 개편하겠습니다.

- 온라인 사업자 규모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법 제재규정 개편  
→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**법위반 억지력** 강화

-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 및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 제재규정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)
  - 주요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수준(1천만원)을 상향하고, 플랫폼의 의무위반\*에 대해서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  - \* ▲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사전에 고지(§20①), ▲통신판매중개외의자 관련 정보 제공(§20②), ▲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(§20③)
  - 한편,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시 폐업에 이르는 등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영업정지 처분대상에서 경미한 법 위반행위는 제외하겠습니다.

- ↳ 플랫폼 등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면서도, 영세 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

## 03

### 핵심 주력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.

- ▶ 핵심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, 기술유용 등 집중 점검  
→ 혁신 **중소·벤처기업**의 **성장력 제고**

- 통신·자동차·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 분야와, 혁신 **중소·벤처기업** 대상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.

####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기술유용 중점 점검 분야·내용

첨단전략·소프트웨어·콘텐츠	▶ 서면 미발급, 대금 미·지연지급, 검사기준 미통지 등
산업기계(반도체 장비·농기계)	▶ 기술자료 유용, 기술자료 요구·수령 시 절차 위반 등

- ↳ 혁신 **중소·벤처기업**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

## 04

미래 성장시장의 경쟁·소비자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 
‘정책보고서’를 발간하겠습니다.

- 해외 정책·법집행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 
→ 미래 성장시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

○ 플랫폼 사업자의 핵심 자산인 ‘데이터’와,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은 ‘구독경제’ 분야에 대한 ‘정책보고서’를 발간하겠습니다.

- 현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쟁법적 이슈(예: 경쟁사업자 배제행위)나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여,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.  
※ '24년 정책보고서 발간목록: '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'(24.12.17), '이커머스 시장연구'(24.12.26)

- ↳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성장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경쟁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민생 밀접분야 소비자 보호

## 01

## 예비부부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▶ ▲주요 결혼식장·준비대행업체 **가격 자율공개 유도**, ▲소비자원(‘참가격’)을 통한 **지역별 비교정보 공개** 등 **결혼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**

- 주요 결혼식장·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.
  - 추가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요 결혼식장·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업체별로 회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‘참가격’에 서비스별 기본·선택품목 가격을 공개(1.24)하였습니다.
- 작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\*에 따라 결혼서비스 가격분포를 지역별(수도권, 광역시 등)로 구분하여 소비자원 ‘참가격’에 공개(1.24)하였습니다.
  - \* 「결혼서비스 실태조사」(기획재정부, '24.11월)
- 향후에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('25.1분기)하고,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해 업체 선택 및 상품 결정에 필요한 정보\*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  - \* ‘가격공개·표준약관 적용 업체’ 현황('25.上~), 품목별 환불·위약금부과 실태('25.下), 선택품목별 이용비율·소비만족도('25.下) 등

➡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민생 밀접분야 소비자 보호

## 02

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 
국외여행·헬스장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.

## ▶ 여행·헬스장 분야 표준약관 개정

→ 불합리한 계약조건 또는 사업자-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 
소비자피해 방지

○ (국외여행)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·입원하는 경우, 사실상 여행 출발이 현저히  
곤란함에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, 현행 표준약관의 계약해제 요건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 
명확하게 개선\*하는 등, 계약해제 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.

\* (예시) 現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
→ 改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(배우자의 친족을 포함)이 사망한 경우

○ (헬스장) 장기 이용료를 선납 받은 뒤 휴업·폐업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 
‘먹튀’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,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헬스장 휴업·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할  
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↳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조건 등을 개정함으로써,  
국외여행·헬스장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민생 밀접분야 소비자 보호

## 03

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 
상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.

- 상조 정보 조회(납입정보·납입금액·보상가능금액 등), 소비자 피해보상 등의 처리가 한 플랫폼 내에서 가능하도록 **원스톱 서비스 제공**

※ '25년 연내 시스템 구축 완료 후 '26년부터 운영 예정

- **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(은행/공제조합)와 무관하게 선수금 납입 내역 및 고인의 상조 상품 가입 여부까지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**
  - 또한, 공제조합 및 소비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에도 플랫폼을 통해 피해보상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- **선불식 상조업체는 회계감사보고서 등 재무현황을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고, 담당 공무원은 선수금 관리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**

## 해당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(안)

소비자	정부(공정위·지자체)	사업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확인</li> <li>▶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</li> <li>▶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</li> <li>▶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</li> <li>▶ 시장상황·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장 현황·통계 관리</li> <li>▶ 법 위반내역 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영·재무정보 제출·관리</li> <li>▶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·관리</li> <li>▶ 선수금 등 정보 제출·관리</li> </ul>

- ➡ **원스톱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, 업무의 디지털화·자동화를 통해 관리·감독 업무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**

## III.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

## 2

##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

## 04

### 상품 이용후기 조작·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·구매후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온라인 쇼핑 분야 이용·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 
→ **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**

○ 온라인 쇼핑시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용후기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)

-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이용후기 게시기간 및 삭제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증 전	개 선
▶ 기만행위의 사후 적발·제재에 중점	▶ 이용·구매후기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기만행위 사전예방

- ↳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용후기 조작 및 삭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

## 05

### 개인간 거래(C2C)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및 분쟁해결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간 거래(C2C) 플랫폼의 **개인정보 수집범위 합리화** 및 개인간 분쟁발생시 **분쟁해결 역할 강화**

-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\*에 발맞춰 C2C 플랫폼에 대해 요구 정보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,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정보를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)

\* 현행 법령상 C2C 플랫폼(통신판매중개자)이 판매자(통신판매중개의뢰자)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→ 거래 안정성 보장 목적을 넘어선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

⇒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, 개인간 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IV.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

1

#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01

##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.

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고정금액(자산총액 5조원)에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 
→ 국가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규제 대상 **기업집단의 수를 합리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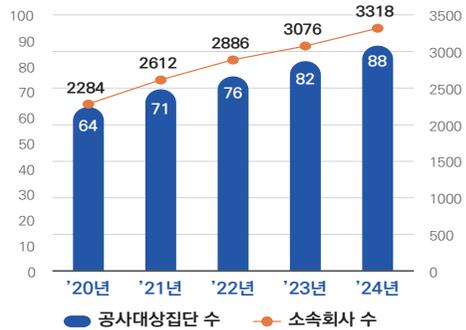
○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

-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에 따라 탄력 조정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고정된 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  - \* 구체적인 GDP 연동비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
  - 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이미 GDP 연동방식으로 조정하였음
  - [ (중전)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→ ('24년부터) GDP의 0.5% 이상 ]

| 참고 | GDP 연동비율별 시뮬레이션 결과

- **A안**: (현행) 5조원 이상 → (개정안) GDP의 0.25% 이상\*  
\* '21년 GDP 확정치 기준 GDP 0.25%는 5.2조 원, 현재 공시집단수 88개 → 적용시 85개 (3개 ↓)
- **B안**: (현행) 5조원 이상 → (개정안) GDP의 0.3% 이상\*  
\* '21년 GDP 확정치 기준 GDP 0.25%는 6.2조 원, 현재 공시집단수 88개 → 적용시 72개 (16개 ↓)

<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(소속회사) 증가 추이>



↳ 대기업집단 규제(공시의무, 사익편취 금지 등)를 적용받는 기업집단 수가 국가경제 규모를 반영하여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1

##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

## 02

일반지주회사 CVC의  
출자·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.

▶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의 외부출자·해외투자 한도 상향  
→ **대기업**의 자금력·경영노하우를 활용한 중소·벤처기업 **투자 촉진**

-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외부출자 한도를 상향하고(최대 40%→50%),  
해외투자 한도도 상향(최대 20%→30%)하겠습니다.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  
\* 해외투자 한도 개정안은 해외 CVC의 평균 해외투자 비중(34.6%)에도 근접한 수치

↳ 외부투자자와 투자조합 공동운용(50:50 출자)이 가능해져 투자활동이 증대되고,  
해외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CVC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입니다.

-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 형태로 기존  
벤처투자회사·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외에 “창업기획자”\*를 추가 허용하겠습니다.  
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  
\*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로, 벤투사·신기사처럼  
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등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 담당

↳ 대기업의 자금력 및 노하우가 혁신적 초기창업자에게 효과적으로  
전수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

## 규제회피 방지 및 실효성 강화

## 03

대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 
과징금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.

- 탈법행위에 과징금 부과, 부당지원·사익편취 과징금 산정방식 보완  
→ 과징금의 **범위반 억지력** 강화

-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 
상응하는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(공정거래법 개정사항)  
\* 현행 공정거래법 상 탈법행위에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·형사처벌만 가능
-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중대성과 실질에 비례하는 합리적 과징금 산정방식을  
마련하겠습니다. (공정거래법 시행령, 과징금고시 개정사항)  
\* 현행 방식으로 지원금액 산출이 곤란한 '사업기회 제공행위'의 과징금 산정 개선

- ↳ 규율 위반과 그에 따른 책임 간의 균형을 바로 세워  
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